

신용카드 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금융소비자(이하 “회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한 중요 서류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제공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 제1항에 의거)
- 아래 설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 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내용과 관련한 권리 구제가 어려울 수 있으니 잘 읽고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회원님, 상품 가입 전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 및 기억해주세요!

신용카드의 특징과 유사 카드와의 차이점을 확인하세요.

- **신용카드는 이를 소지한 회원의 경제적인 신용을 이용하여, 현금을 즉시 지불하지 않아도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구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반드시 회원이 직접 발급을 신청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는 본인의 신용한도 내에서 미리 상품을 구입하고, 정해진 날짜에 한꺼번에 갚는 상품입니다.**
때문에 구매 즉시 결제가 이루어지는 체크카드나 직불카드와 이용한도나 할부 결제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사용 가능 가맹점	신용카드 가맹점	신용카드 가맹점	직불카드 가맹점
발급기관	신용카드사	신용카드사	은행
이용한도	신용한도 이내	예금잔액 이내	예금잔액 이내
결제	선 구매 후 결제	구매 즉시	구매 즉시
할부 결제 이용	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편·불만이 자주 발생해 숙지가 필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① 카드 뒷면에는 꼭 서명을 해주세요!

회원은 발급된 카드를 받는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이곳에 서명을 하지 않은 채 카드를 분실하여 부정 사용된 금액은 회원이 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 중 카드를 해지하면 연회비를 반환해 드립니다.

연회비는 카드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1년 단위로 청구됩니다. 연회비 부과 기간이 끝나기 전에 카드를 종도 해지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연회비는 회원이 카드사와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10영업일(불가피한 경우 3개월) 이내에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카드 발급 및 부가서비스 제공에 이미 지출된 비용은 반환금액에서 제외됩니다.

③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 시 주의하세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이용하여 이월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수수료가 부과되며,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시) 지난 달 이월금액 50만원, 이번 달 30만원(일시불) 이용 시 약정결제비율(50%), 수수료율(연 17%)로 가정했을 때

청구되는 금액은 총 406,986원(①+②)이며, 다음 달로 이월되는 잔액은 40만원(③)입니다.

① 리볼빙 수수료 : 6,986원(전월 잔액(50만원)×수수료율(17%)×30일/365일)

② 청구되는 원금 : 40만원([(50만원(이월금액)+30만원(당월 이용금액))×50%])

③ 이월잔액 : 40만원(80만원(이월금액+당월 이용금액)-40만원(청구원금))

신용카드 이용대금 연체 시 발생하는 불이익을 알아두세요.

- **신용카드 이용대금 연체 시에는 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원리금에 연체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금융거래가 제약되고 신용점수 등이 하락할 수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문의사항이나 불편·불만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로 문의해 주세요.

- 현대카드 고객센터(1577-6000) 또는 홈페이지, 앱을 통해 카드나 금융 상품에 관한 문의가 가능합니다.
분쟁 발생 시에는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 피해를 주의하세요.

- 겸찰 및 금융사, 가족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자금을 이체하거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상품 개요, 계약기간 및 연장

· 상품 개요

신용카드는 신용을 담보로 이를 소지한 회원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상품 등을 현금의 즉시 지불없이 구입할 수 있는 증표로서 회원이 발급을 신청하여 신용카드사가 발행한 것을 의미합니다.

· 계약기간 및 연장에 관련 사항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은 최대 5년이며, 카드 표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유효기간이 도래한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회원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갱신 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회원에 대해 신용카드를 갱신 발급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원에 대해서는 갱신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이용대금 상환 방법, 금리(수수료) 및 변동 여부

- 회원은 카드 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자동이체 결제 방법 또는 카드사가 정하는 방법(즉시결제, 가상계좌(대금결제를 위해 카드사가 회원별로 부여한 입금전용 계좌) 입금 등)으로 결제하여야 하며, 대금 결제일은 결제 가능일 중에서 회원이 정하는 날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금리(수수료율)
일시불 결제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한 번에 결제하는 방식	-
할부 결제	할부 기간에 걸쳐 동일 금액을 분할하여 결제하는 방식	(7.9)% ~ (19.9)%
단기카드대출 (현금서비스)	신용카드 이용한도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단기 금융서비스	(5.5)% ~ (19.9)%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리볼빙)	신용카드 이용대금 중 일정금액 이상만 결제하면 잔여대금에 대한 상환이 자동으로 연장되고 잔여 이용한도 내에서는 신용카드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결제 방식	(4.5)% ~ (19.9)%

· 금리의 변동 여부

- 회원이 할부 결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 시 이용 개월 수, 이용실적 및 신용도 등에 따라 금리는 변동 가능합니다.

3. 수수료율

· 해외서비스 수수료 : 신용카드 해외 이용 시(해외 사이트 거래 포함) 부과하는 수수료

- 수수료율 : (0.18) %

(거래미화금액 × 해외서비스 수수료율 0.18%) × 전신환매도율 ** 거래미화금액에는 국제브랜드 수수료가 포함되지 않은 달러금액

· 국제브랜드 수수료 : MasterCard/VISA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카드사에 부과하는 수수료

- 수수료율 : (1)% ~ (1.4%) (MasterCard/Diners 1%, VISA 1.1%, AMEX 1.4%)

(거래미화금액 × 국제브랜드 수수료율 1%/1.1%/1.4%) × 전신환매도율

· 자동화기기(ATM) 이용수수료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자동화기기(ATM)를 통해 이용하는 경우 회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기기 이용수수료

- 이용수수료 : (800) 원 ~ (1,300) 원

4. 연회비 및 연회비 반환

· 연회비 : 연회비는 카드사가 신용카드 발급, 이용대금명세서 발송 및 회원관리시스템 유지 등 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기본연회비와 카드별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제휴연회비로 구성됩니다.

· 연회비 청구 : 카드사는 카드 이용대금에 우선하여 연회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연회비는 신용카드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1년 단위로 청구됩니다. 다만, 연회비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카드에 대한 연회비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 연회비 반환 : 회원이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 반환금액은 회원이 카드사와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하루 단위로 계산하며 회원이 카드이용이 가능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반영된 다음 비용은 반환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신용카드의 발행·배송 등 신용카드 발급(신규 발급에 한정)에 소요된 비용

- 신용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

(예시) 연회비 2만원, 반환금액 산정 제외 비용 1만원, 연회비 부과대상일수 200일, 잔여일수 20일인 경우 반환되는 연회비

$$\text{반환되는 연회비} = (2\text{만원} - 1\text{만원}) \times 20\text{일}/200\text{일} = 1,000\text{원}$$

· 연회비 반환 기한 : 회원이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부가서비스 제공내역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여 드립니다.

5. 계약 해지 시 불이익

- 회원이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연회비를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하루 단위로 계산)하여 그 금액을 차감하여 반환하며, 카드사는 카드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날까지의 채무 전액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신용카드 이용의 제한

- 카드사는 회원 및 가맹점의 신용도, 법령 규정, 감독기관의 지시 등을 고려하여 회원의 특정 가맹점(국내 및 해외 가맹점 포함)에 대한 카드 이용 또는 이용한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시) 이용 제한 가맹점

- 카지노
- 경마, 경정, 경륜장
- 복권방, 해외가상화폐거래소 등

7. 신용점수에 미치는 영향

- 필요 이상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개인신용평점이나 이용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상환 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하는 경우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연계·제휴서비스(부가서비스)

연계·제휴서비스(부가서비스) 내용 및 제공 조건은 신용카드 상품별로 상이함에 따라 별자로 제공되는 연계·제휴서비스 및 연회비 관련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연체이자율 및 연체에 따른 불이익

- 연체이자율은 [회원별, 이용 상품별 약정금리 + 연체가산금리]로 적용합니다.

- 연체가산금리는 연 3%로 최고 연 20%로 합니다.

- 단, 연체 발생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 일시불 거래를 연체하는 경우 : 거래 발생시점 기준 최소기간(2개월)의 유이자할부 약정금리 + 연체가산금리
 - 무이자할부 거래를 연체하는 경우 : 거래 발생시점 기준 동일한 할부 계약 기간의 유이자할부 약정금리 + 연체가산금리
 - 그 외의 경우 : 약정금리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상행위로 인한 법정이율)과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적용
-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 대출 기준)
-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는 경우 신용도 하락, 연체이자 및 지연배상금 발생, 카드 이용 정지, 카드 이용 한도감액, 카드 이용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 카드사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금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존 약정에 따를 때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10. 이용대금 결제일 전 이용대금 상환이 필요한 경우

·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의 존재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하며, 채무자인 회원은 당초 지정한 이용대금 결제일까지는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 기간 동안 채무자인 회원이 가지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 합니다.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 모든 이용대금을 즉시 상환
- 연체이자 부담
- 일정 기간 경과 후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등

· 파산,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경우 등(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9조 등에서 정한 사유)

- 카드사로부터 별도 청구가 없더라도 모든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대금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상환하셔야 합니다.

(참고) 주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제출하여 카드사의 채권보전에 중대한 손실을 유발한 때
- 신용카드 이용대금(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포함)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 할부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연체하고, 그 연체한 금액이 총 할부금액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
- 다른 채무로 인하여 압류, 경매, 기타 강제 집행을 당한 경우 등

11.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위험성 및 예시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이용하여 이월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며,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 등 계산 사례

(예시) 전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월잔액 : 50만원, 당월 신규이용금액 : 일시불 30만원,

약정결제비율 : 50%, 최소결제비율 : 10%,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율 : 17%,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경과일수 : 30일,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대상 외 금액 : 10만원

구분	계산 방법	금액
최소결제금액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최소청구원금과 5만원 중 큰 금액)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대상 외 금액	8만원 + 6,986원 + 10만원 = 186,986원
약정결제금액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약정청구원금)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대상 외 금액	40만원 + 6,986원 + 10만원 = 506,986원
리볼빙 최소청구원금	(전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월 잔액 + 당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신규이용금액) × 최소결제비율	(50만원 + 30만원) × 10% = 8만원
리볼빙 수수료	전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월 잔액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율 × 이용경과일수/365(윤년은 366)	50만원 × 17% × 30일/365 = 6,986원
리볼빙 약정청구원금	(전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월 잔액 + 당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신규이용금액) × 약정결제비율	(50만원 + 30만원) × 50% = 40만원

※ 당월에 결제해야 할 금액은 약정결제금액이나, 최소결제금액만 결제하면 연체로 처리되지 않고,

잔여결제금액은 다음 달로 자동 이월되어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약정 체결 시 제공하는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위법계약해지권

- 카드사가 아래와 같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객은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1조를 위반하여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 위법계약 해지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날 중 먼저 도달한 기간 내에 서면,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서식(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카드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또는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 카드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며, 거절 시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13. 민원 및 분쟁에 관한 사항

- 신용카드와 관련한 의문사항 또는 불편한 사항(민원)이 있을 경우, [현대카드 홈페이지\(www.hyundaiicard.com\)](http://www.hyundaiicard.com) 또는 고객센터(1577-600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14. 설명서의 법적근거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울러 본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